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001호 2013. 12. 24.(화)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143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1432호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8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1436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143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 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2.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고문변호사 정원 증원을 통해 다양하고 보다 정확한 의견수렴을 거쳐 불필요한 쟁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 고문변호사 수당을 상향조정하여 동기부여는 물론 보다 정확하고 내실 있는 법률자문창구 운영

2.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위촉인원 증원 【제2조】
 - 3인 이내 ⇒ 5인 이내
- 고문변호사 해촉에 관한 사항 개정 【제4조제1항 각 호】
 - 해촉에 관한 사항의 구체화를 통해 고문변호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 진행 중인 자문 또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추가 【제4조제2항】
- 고문변호사 수당 상향조정 【별표】
 - 고문변호사 수당 : 200,000원 ⇒ 400,000원

※ 추가소요예산 : 26,400천원

- 440,000원×12회×5명 = 26,400,000원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63,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3인이내”를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인 이내”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규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가. 불변기일 도과
 - 나. 소송 당사자측과의 담합
 -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고문변호사가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자문 또는 소송사건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송비용지급 기준(별표)”을 “소송비용 및 보수지급 기준(별표)”으로 한다.

별표의 “고문변호사수당”란 중 “200,000원”을 “400,000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문변호사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고문변호사 수당은 공포일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위촉) 구청장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u>개업중인 변호사중</u>에서 <u>3인이내</u>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p>	<p>제2조(위촉) ----- ----- <u>개업 중인 변호사</u> 중에서 <u>5인 이내</u>----- -----.</p>
<p>제3조(직무) ①고문변호사는 다음 <u>각호</u>의 사항을 처리한다.</p> <p>1. ~ 4. (생략)</p> <p>5. <u>기타</u>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p> <p>②고문변호사는 제1항 <u>각호</u>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u>쟁송사건</u>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p>	<p>제3조(직무) ① ----- --- <u>각 호</u>-----.</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u> ----- -----</p> <p>② ----- <u>각 호</u>----- ----- ----- -----.</p>
<p>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u>다만, 고문변호사의 업무수행 과정 중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u></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4조(임기) ① ----- ----- ----- <u>다만,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u></p> <p>1. <u>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u></p> <p>2. <u>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u></p> <p>3. <u>정원의 조정 및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u></p>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 및 제3조제1항제4호의 선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지급 기준(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 ④ (생략)

4.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 도과

나. 소송 당사자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고문변호사가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자문 또는 소송사건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
----- 따라 -----
----- 대해서-----

-----.

제6조(소송비용 등) ① -----

----- 소송비용 및 보수지급 기준(별표)-----
-----.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별표] 소송비용 및 보수지급기준(제6조 관련)			[별표] 소송비용 및 보수지		
구 분	지 급 기 준		송 소 사 례 금		
	내 용	착 수 금			
신청사건	변론이 없는 경우	200,000	없 음		
	변론이 있는 경우	400,000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선임	2천만원미만 및 무소가사건	700,000	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1,000,000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1,500,000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2,000,000			
	1억원이상 2억원미만	2,500,000			
	2억원이상 3억원미만	3,000,000			
	3억원이상 4억원미만	3,500,000			
	4억원이상 5억원미만	4,000,000			
	5억원이상	4,500,000			
	상소심	본안소송 착수금 지급금액			
환송사건	본안소송 착수금의 1/2이내				
기 타	1. 인 지 대	실 액			
	2. 송 달 료	실 액			
	3. 검 증 비	실 액			
	4. 감 정 료	실 액			
	5. 기타비용	실 액			
고문변호사 수 당		200,000원 이내			
1. 소가 5억원 이상은 5억원으로 봄. 2. 수당, 착수금, 송소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			1. 소가 5억원 이상은 5억원으로 봄. 2. 수당, 착수금, 송소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1432호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 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2.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송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실제운영과 일치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의 영조물 배상에 관한 사항 추가 【제7조제5항】
 - 공공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법률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하여 소송 및 배상이 진행됨에도 현행 규정상 관련 조항이 없어 새로 추가함
- 조직개편에 따른 팀 명칭 변경 【제3조제1항, 제4조제1·2항】
 - 감사법무담당 ⇒ 법무담당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63,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서구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소송사무처리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감사법무담당”을 “법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사법무담당”을 각각 “법무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참고사항

제5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법률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공제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소송대행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준용)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제 4 장 소송결과의 조치

제15조제1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승소한”을 “승소하였을”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인천광역시서구소송사무처리규칙</u></p> <p>제3조(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 사건은 기획홍보실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하며 <u>감사법무담당</u>이 총괄한다.</p> <p>② (생략)</p> <p>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타 문서에 우선하여 <u>감사법무담당</u>에게 전달하여야 한다.</p> <p>② 소송 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에서는 즉시 <u>감사법무담당</u>에게 이송하여야 한다.</p> <p>제 2 장 소송의 제기</p> <p>제5조(소송제기의 요청) ①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실·과장은 다음 <u>각호</u>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p>	<p><u>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u></p> <p>제3조(소송의 주관) ① ----- ----- ----- <u>법무담당</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 ----- ----- <u>법무담당</u>-----.</p> <p>② ----- ----- ----- <u>법무담당</u>----- -----</p> <p>제5조(소송제기의 요청) ① ----- ----- ----- <u>각호</u>----- -----</p>

1. ~ 5. (생략)

6. 기타 참고사항

②사업소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1. ~ 4. (생략)

제7조(소송대리인등의 선임) ① ~ ④ (생략)

<신설>

제8조(소송대리인등의 직무) ①소송 대리인 및 소송 수행자는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기타 위임장이 위임된 사항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참고사항

②-----

----- 각 호-----

-----.

제6조(제소결정) -----
----- 각 호-----

-----.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소송대리인등의 선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법률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공제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소송대행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소송대리인등의 직무) ①--

-- 해당 -----
----- 각 호-----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
은 사항

6. 제9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거 소송 담당자를 두지 아
니할 경우에는 소송 담당자의
직무

②소송대리인 및 소송 수행자는
다음 각호의 소송 진행 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소송 진행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 4. 5. (생략)
- 6. 기타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
항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소
송담당자는 소송 대리인을 보좌
하며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
행한다.

- 1. 2. (생략)
- 3. 기타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
항

②소송 담당자는 당해 소송사건
담당에 있어 기획홍보실장의 지
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6. -----
----- 따라 -----

②-----
----- 각 호 -----

- 1. 2. (현행과 같음)
- 3. ----- 새로 -----

- 4. 5. (현행과 같음)
- 6. 그 밖에 -----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 해당 -----
----- 각 호 -----

- 1. 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

②----- 해당 -----

제 3 장 피소사건의 응소

제12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4조(준용)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제15조(선고 공판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대리인과 소송담당자는 선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기획홍보실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정지신청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판결문 송달이전에 정지결정을 득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제12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

----- 대해서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준용)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제15조(선고 공판에 대한 조치) ① -----

마련하여야 -----.

② -----
대해서 -----

-----.

제17조(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2조(임의 변제) ① (생략)

② 임의변제는 다음 각호의 서류
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23조(소송비용 청구) ① 소송확
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
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
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호의 1에 해
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
청을 아니할 수 있다.

1. 2. (생략)

3.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②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구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임의 변제) ① (현행과 같
음)

② ----- 각 호 -----

1. ~ 5. (현행과 같음)

제23조(소송비용 청구) ① -----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② -----

----- 지
체 없이 -----

제25조(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①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5조(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①-----

 - 대해서-----
 -----.

②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1436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 12. 24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위원회 구성목적에 맞게 필요한 인원으로 위원수를 최소화하여 그동안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당연직 위원수를 31명에서 10명 이내로 축소 구성
 - 부구청장, 각국장, 보건소장, 실과장(총 31명)
 - ⇒ 부구청장, 각국장, 보건소장, 기획홍보실장, 감사실장, 각국의 직제순서에 따른 선임과장(총 10명)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5,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하여(이하 “결정”이라 한다) 구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하여 구에 구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 및 실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를 “도시관리국장, 보건소장, 기획홍보실장, 감사실장 및 각국의 직제순서에 따른 선임과장으로 하고,”로,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정한다”를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전일”을 “전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항을 결정한다.

1. (생략)

2.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구단위 위원회, 심의회, 추진 위원회, 협의회등(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의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

3.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 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현행과 같음)

2. ----- 따라 -----

3. 그 밖에 -----

제4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

----- 전날 -----

-----.

⑤ ~ ⑦ (현행과 같음)